

2001년도 행정감사 서면자료(답변) 요구사항 (사 회 도 시 위 원 회)

일 자	요 구 자	자료(답변)요구사항	관련부서
2001.11.28(수) 13:32~15:46	허명도위원	○ 영아전담시설 인건비 지원가능 여부 질의 및 보건복지부 회신내용	사회복지과
		○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유로 부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소송 결과	
	강정순위원	○ 피정1동 경로당의 등록경위	

감 사 자 료

받음 : 사회도시위원회 강 정 순 위원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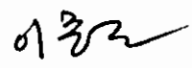
제목 : 괴정1동 소재 경로당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

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. 11. 28 사회복지과 감사도중
요구하신 괴정1동 소재 경로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〈 경로당 현황 〉

- 소 재 지 : 괴정1동 509번지(소유자 : 송신철)
- 구 조 : 2층 슬라브(1층 : 경로당, 2층 : 주택)
- 수용인원 : 10여명(할머니)
- 기 타 : 무료임대로서 전기 및 수도료를 월 10여만원정도
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있음.
(※ 현, 무등록 경로당임). 끝.

2001. 11. 30

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장 이 중 근 

감 사 자 료

관유 : 사회도시위원회 허 명 도 위원님

제목 : 영아전담 보육시설 행정심판 사건과 관련 감사자료 제출

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. 11. 28 사회복지과 감사도중
요구하신 영아전담 보육시설 행정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
부에 질의 및 회신내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붙 임 : 보건복지부 질의 및 회신내용 관련공문 사본 각 1부. 끝.

2001. 11. 30

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장 이 중 근 이문



부산광역시사하구

우604-701/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17-16 번지/ 전화(051)220-4372/ 전송(051)220-4319
사회복지과 과 장 이종근 담당 강명규 담당자 윤희주

문서번호 사회 65210- 1225
시행일자 2001. 5. 4 (년)
경유 부산광역시장(여성정책과장)
받음 보건복지부장관
참조

제목 국고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질의

우리구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영아전담
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「질의사항」에 있어 국고보조금지원
가능여부를 의견 조회하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현 황

○ 영아전담시설은 영아를 전담으로 보육하여야 하는 보육시설이나,
현아동 입소실태는 同시설 인근 거주 유아(3세이상)가 보육을 희망하는 경우
가 많으며, 同시설에서 보육중인 영아(2세이하)가 유아(3세이상)연령에 달하였
으나 계속 同시설에 재입소하고자 함.

2. 국고보조금 지원기준(2001년도 보건복지부 지침)

- 대 상 :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영아전담보육시설
- 내 용 : 원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 100%, 취사부(1명) 100%

3. 질의사항

< 영아전담보육시설의 유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여부 및 비율 >

- 갑설 : 국고보조시설(사회복지법인)에 대한 지원기준(40인이상
시설)을 준용하여 유아보육교사의 인건비는 50%을 지원하여야 함.
- 을설 : 유아보육교사 인건비는 영아전담시설 국고보조금 지원
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미지원 하여야 함.

4. 우리구 의견 : 질의내용 【갑설】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 끝.

「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」

보건복지부

정보통신망

427-72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(02) 503-7578 전송 (02) 504-6238
 아동보건복지과 과장 : 이우철 사무관 : 장호연 담당 : 류계덕

문서번호 아동65210-1743

시행일자 2001. 05. 23. (1년)

공개여부 공개

경유

발음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

참조 보육관련담당과장

선 립	과장		지 시	
접	일자 시간	2001. 5. 20	결 재	당장.
수	번호		공 람	
처 리 과	담 당 자		공 람	
심 사 자			심 사 일	

제 목 국고보조금 지원 질의 회신

1. 부산 사하구 사회 65210-1275(2001. 5. 4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영아전담보육시설은 상시 영아 30명 이상을 보육하는 경우 시·도지사가 관할 시·군·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종합·검토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. 영아전담시설은 영아(2세미만, 2세)만을 보육할 수 있으며, 3세이상 유아는 보육할 수 없습니다. 끝.

2001. 5. 23

보건복지부장

전결 아동보건복지과장 이우

